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9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 박수영·송언석·이종욱

이인선 · 서천호 · 박수민

최은석 · 강승규 · 구자근

권성동 • 박성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

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해당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1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1항에 해당하는 가업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사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무인력의 근무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

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지정을 말한다)된 지역에 그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업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것
-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그 기업의 전체 상시근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 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 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 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되, 해당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11항에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 해당하는 기업은 포함한다-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 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② 제1항 및 제11항-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

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 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 산에 대해서는 <u>제1항</u>에 따른 공 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 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 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u>제1항</u>에 따라 공 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

<u>제1항 및 제11항</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 제2항 및 제11항</u>
,
5
<u>제1항 또는 제11</u>
<u>항</u>

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⑥ ~ ⑩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항에 해당하는 가업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
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 ⑩ (현행과 같음)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 된 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 사"라 한다)를 두고 사업을 영 위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사와 과 밀억제권역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무인력의 근무지를 「조세특 례제한법 | 제99조의4제1항제1 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 로 이전한 기업 또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지정을 말한다) 된 지역에 그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가업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가업 상속 재산가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다.

- 1.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u>할 것</u>
-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
 사 및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
 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 그 기업의 전체 상시근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